

2026년도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현장실습 안내

○ 현장실습 개요

- 평가기간 : 현장실습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
- 평 가 자 : 현장실습기관 체육지도자(담당자)
- 평가방법 : 평가표에 의한 연수생 평가 실시

○ 현장실습 평가사항

평 가 항 목	주 요 내 용	비고
출 석 상 황	• 결석 1회 이상 또는 지각·조퇴 각 2회 이상 시	연수이수불가
현장실습 태도	• 용모, 규정 준수, 윤리 의식, 책임감, 성실성 등	20점
체육지도 기술	• 문제해결 능력, 체육지도 기록, 안전관리, 사용장비 정비 및 관리 등	40점
의사소통 및 대인관계	• 선수 등 의사소통, 의사표현 능력 등	30점
행 정 처 리	• 행정서류 처리능력 평가(현장실습일지, 현장실습보고서 작성 포함) * 현장실습보고서 : 글자크기 13, 장평 100%, 자간 0%, 행간 160% 준수	10점

○ 이수요건 : 현장실습 출결 90% 이상 참여, 현장실습 평가 100분의 60% 이상

※ 평가점수가 60% 이상 충족했다라도 출석률 90% 미만 시 연수이수 불가

○ 현장실습 세부일정 및 장소

- 현장실습은 종목별 실습 지정 장소에서 현장 지도자의 지도아래 실습 진행
- 현장실습 일정: 2026.08.08.(토) ~ 09.27.(일)

현장실습 장소	내용
연수원 지정	• 연수원으로 계획서, 서약서 등 제출 • 연수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습 진행
연수생 지정	• 요건에 맞는 기관과 지도자 선정 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 (승인 후 현장실습 진행) • 연수생들의 편의를 위해 주거지역에서 선택가능

※ 현장실습의 경우 연수생 등록 인원, 현장실습기관 등의 사유로 장소 및 일정 변경될 수 있음

※ 현장실습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수원에서 지정한 실습기관만 가능하나 특수상황 및 거주지역에 따라 연수생이 직접 기관 선정하여 현장실습 진행 가능

단. 현장실습기관 요건 및 현장실습 지도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

○ 현장실습 선정요건 및 실습 내용

구분	현장실습내용	현장실습기관
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	○ 종목별 현장실습 <일반과정: 24시간> - 훈련지도 보조 및 주관 : 23시간 - 현장실습 보고서 제출 : 1시간 <특별과정: 8시간> - 훈련지도 보조 및 주관 : 7시간 - 현장실습보고서 제출 : 1시간	○ 현장실습기관 요건 - 학교, 경기단체, 체육단체, 공공기관 산하의 스포츠 지도 기관, 체육시설업, 스포츠클럽 ○ 현장실습 지도자 요건(아래 중 1명 이상) - 1급 생활(전문) 자격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지도사 실무경험이 있는 자 - 2급 생활(전문) 자격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지도사 실무경험이 있는 자 -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

○ 현장실습 지도비

- 연수생 1명당 소정의 지도비 지급(정확한 금액은 추후 안내 예정)
- 연수생 개인섭외의 경우 지급 금액 및 조건 등을 지도자와 사전 협의 (조건 변경 불가)

○ 연수생이 현장실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

- 제출서류 :
 - 현장실습 계획서, 현장실습 서약서, 현장실습기관 동의서
 - 현장실습기관 및 지도자 요건 확인 서류(사업자등록증 사본(학교는 제외))
 - 현장실습기관 지도자 자격증 사본, 현장실습기관 지도자 재직증명서, 현장실습지도자 청렴서약서

○ 연수생이 근무처를 현장실습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

- 대 상 : 현장실습 기관 요건 충족 기관에서 1년 이상 지도자로 재직 중인 자 (소속기관에서 해당종목 지도자에 한함)
- 확인서류 : 건강보험득실확인서,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 등 근무 경력 1년 이상
- 제출서류 :
 - 현장실습 계획서, 현장실습 서약서, 현장실습기관 동의서
 - 재직증명서(본인), 현장실습기관 지도자 자격증 사본, 현장실습기관 지도자 재직증명서, 현장실습지도자 청렴서약서

○ 현장실습 시 유의사항

- 연수생 현장실습 계획서, 서약서 등 사전 작성 필수
- 현장실습 시 부상,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필요시 개인 보험 가입
- 연수원에서 정한 현장실습 기간 내 현장실습 미시행 시 연수 이수 불가
- 현장실습 시 종목 특성상 실비가 필요한 경우 연수생이 현장실습 기관에 직접 부담
- 현장실습 시 청렴의무 준수
 - 현장실습 중 담당 지도자에게 식사·금품·편의제공 및 사적인 만남 불가, 편의제공 등을 요구받은 경우 연수기관에 신고
- 연수중단 및 조치대상
 - 연수를 극히 게을리 한 경우(수업 태도불량, 장기 결석 등)
 - 연수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리료 연수를 받도록 한 경우
 - 질병이나 그 밖에 연수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
 - 처리절차 : 연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 중단(연수중단 조치 5일 이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통보)